

# 商標登錄無効

—第111665號—

〈大法院 第3部 判決〉 (1989, 5, 23)

事件審號 : 88후 790

裁判長 : 김용준

關與法官 : 박우동 · 이재성 · 윤영철

1. 審判請求人(被上告人) : (주)투모로우 뉴스(대표 이영희)
2. 被審判請求人(上告人) : 정동호(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
3. 原審決 : 特許廳 抗告審判所 1988. 5. 28字 1986年 抗告審判(當) 第58號
4. 主文 : 上告를 기각한다. 上告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부담으로 한다.

## 5. 이유 :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商標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商品에 사용되는 2개의 商標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判斷하여야 할 것이며, 商標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

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혼동하기 쉬운것은 類似商標라 할 것이라 실시한 후, 이러한 관점에서 본건 登錄商標와 引用商標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양자 모두 캐논(canon)을 商標구성의 공통요부로 하고 있어 이들이 공존할 경우 商品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被審判請

求인의 抗告를 棄却하였다.

원심결의 理由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的事实인정과 법률적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查證법칙위반 · 심리미진 · 判斷유탈 · 理由불비 ·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上告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우리 協會에서는 매일 工業所有權 관련 대법원 判例文을 한데 모아 「工業所有權 判例集」을 發刊하고 있습니다.

會員에게는 무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編輯者 註—

